

p23 위에서 10번째 줄 아래 밑줄 내용을 수정

(5)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①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상법 제666조)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요식성을 가지나 그 요식성은 어음, 수표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법상 보험증권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법은 위의 기본적 기재사항 이외에 화재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 인보험증권 및 상해보험증권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p83 위에서 3번째 줄 아래 밑줄 내용으로 수정

0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p84 아래 (3) 신규 밑줄 내용 전체 추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조의 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 ㉣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84 위에서 4번째 줄 아래 밑줄 내용으로 수정

(4) 심의회(제3조)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 ㉠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84 (3) 신규 내용에 따라 p85~p87 번호체계 아래 밑줄 내용으로 수정

(5) 위원장의 직무(영 제2조)

(6) 회의(영 제3조)

(7) 위원의 해촉(영 제3조의2)

(8) 분과위원회(영 제4조)

(9) 수당 등(영 제5조)

(10) 운영세칙(영 제6조)

p88 아래에서 2번째 줄, 9번째 줄 아래 표 내용 중 밑줄 부분 수정

재해보험의 종류	<u>보험가입자의 기준</u>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임산물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가축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u>어업</u> 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p90 위에서 6번째 줄 박스 내용 아래 밑줄 내용으로 전체 수정

(8) 보험료율의 산정(제9조, 영 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u>
권역 단위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u>

p99 위에서 2번째 줄 ㉠ 아래 밑줄 내용으로 전체 수정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영 제12조의9, 별표 2의3)

p99 (9) 내용 아래 밑줄 내용 신규 추가

(9)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영 제12조의 10, 별표 2의4)

p100~p102 (12), (14) 아래 밑줄 내용 신규 추가 / 번호체계 아래 밑줄 부분 수정

(11) 수급권의 보호(제12조)

-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2)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영 제12조의11)

- ①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3) 보험금의 압류 금지(영 제12조의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 ①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
입금된 보험금 전액
- ②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14)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제13조)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15) 업무 위탁(제14조, 영 제13조)

(16) 회계 구분(제15조)

(17) 분쟁조정(제17조)

(18) 재정지원(제19조)

(19)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영 제15조)

p103 위에서 1번째 줄 ④ 아래 밑줄 내용으로 수정

④ 재보험 약정서(영 제1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p103 (2)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내용 중 ②, ③ 아래 밑줄 내용으로 수정

② 기금계정의 설치 (영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 (제22조)

p104 위에서 13번째 줄 ③ 아래 밑줄부분 수정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영 제18조)

p106 아래에서 1번째 줄에 다음 아래 신규 밑줄 내용 ㉠~ ㉣ 신규추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p108 아래에서 1번째 줄 ③ 아래 밑줄 부분 내용으로 수정

③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영 제22조의2) :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109 (10) 내용 신규 추가

(9) 청문(제29조의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②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10) 규제의 재검토(영 제22조의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119 문항 17번 다음 해설에 아래 밑줄 내용 신규 추가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손해평가인 → 손해사정사

② 입산물재배 관련 학과 → 보험 관련 학과

③ 손해평가사 → 손해평가인

정답 ④

p158 아래에서 4번째 줄 ㉠ 아래 밑줄 부분 내용 수정

㉠ 생육적온에 따른 분류

p189 위에서 6번째 줄 (2) 아래 밑줄 부분 수정

(2) 화성의 유도 요인

p196 위에서 5번째 줄 ①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

(1) 작부체계란

① 작부체계(作付體系, Cropping System) 는 일정한 토지에 작물을 조합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p200 (2) 종묘 > ④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

④ 종자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종자가 저장 중 발아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종자의 수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장성이 전혀 없는 난저장성 종자(難貯藏性種字 ; recalcitrant seeds)로 구분한다.

p201 ㉠ 겉씨식물의 종자 형성의 과정 > ㉠ 아래 밑줄 부분 수정

㉠ 겉씨식물의 종자 형성의 과정

㉠ 중앙세포 내의 난핵이 수정한 후에 유리핵이 분열해서 다수의 핵을 형성한다.

㉠ 세포막이 형성돼 전배가 나타난다.

㉠ 전배가 분화해 배가 형성됨

p219 위에서 2번째 줄 밑줄 부분 수정

⑤ 담수작파재배 기술의 장·단점

p222 위에서 7번째 줄 아래 밑줄 부분 수정

⑦ 벼 품종의 선택 기준

⑦ 품종 선택의 기준

- 재배자의 기술 능력, 병·해충, 시비, 토양,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한다

p223 중간 부분 ㉔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

㉔ 깨시무늬병

- 깨시무늬병이 발생할 때는 재배관리방법이나 토질 등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는 칼륨, 규산질비료, 객토, **추비** 등을 이용해 토양 개량으로 비료 성분의 보유능력을 높여 비료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후기까지 벼를 건전하게 하는 식으로 병의 발생을 줄인다

p241P 아래에서 7번 째 줄 ㉕ > ㉖ 밑줄 부분 수정

㉕ 동·상해 일반대책

- ㉖ 내동성 작물과 품종의 선택 : 월동**에** 안전한 작물이나 품종을 선택하고, 개화·개엽의 시기가 늦어서 봄철 늦서리에 동상해를 피할 수 있는 회피성 품종을 선택한다.

p243 아래에서 1번째 줄 밑줄 부분 수정

㉒ 습해의 발생

- ㉗ 토양이 **다습해** 토양산소가 부족하면 **직접피해로** 뿌리의 호흡장애가 생기고,

p256 아래에서 10번째 줄 아래 밑줄 부분 수정

- 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은 우선 토성을 개량해야 하고 상토는 점토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배수가 좋지 않으므로 토양 물리성을 고려해 적절히 **조성하도록** 한다.

p279 위에서 9번째 줄 표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

토양비**옥**도

p283 아래에서 11번째 줄 아래 밑줄 부분 수정

㉑ 국화의 절화재배

㉗ 품종

㉔ 스프레이 국화

- 소국이 주를 이루며 하나의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을 피게 하는 방식으로 **순자르기**를 하지 않아 노력이 적게 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